

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2. 23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2. 2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2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□ 개정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의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
○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운영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2조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92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-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4조제2항)

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제2항 중 “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에탁하여 관리한다.”를 “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	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

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에탁하여 관리한다.

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